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기설비 우선 접속 허용 등〉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1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6.
3. 회부연월일 : 2026.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부족과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계통의 접속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 ④ (생략)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단서 신설>	4. ----- ----- ----- ----- ----- ----- ----- <u>없을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의 차질 발생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u>

[개정안과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이원택의원안 (의안번호 22181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2220266)	반영 여부
전기설비 우선 접속 허용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우선 접속 허용 (안 제20조제1항)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우선 접속 허용 (대안 제20조제1항)	기반영 (수정 수용)
발전사업 허가기준 완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 차질 여부 고려 배제 (안 제7조제5항제4호)	현행 유지 (대안 미포함)	미반영

2026년 5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차별 없는 송·배전설비 이용 원칙(망 중립성)에 예외를 두어 특정 사업자에게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단순히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수익을 나누는 형태를 공익으로 간주할 경우, 이는 '사익의 집합'에 불과하여 자칫 위장된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위원회 대안은 무분별한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우선 접속 대상을 설비용량 1MW 이하로 제한하고 그 대상을 ① 국가 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시행 사업, ②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추진 사업, ③ 기타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법률에 엄격히 구체화하여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되었음¹⁾.

한편, 본 개정안 안 제7조제5항제4호 단서에서 제안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 차질 발생 여부 고려 배제' 조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계통안정화 설비를 갖추었다고 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허가기준 자체의 예외를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 전제조건외 범위상 모순이라는 법안소위의 지적이 있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해당 조항이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과도하게 완화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안에서 제외되었음.

종합하면, 이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입법 목적이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제2220266호)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정·보완되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

-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본문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